[별지 제23호서식] <신설 2023. 10. 19.>

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

1. 지정번호: 제 호

2. 기관명/약호:

3. 기관 소재지:

4. 업무수행 범위: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기술표준원장 직인